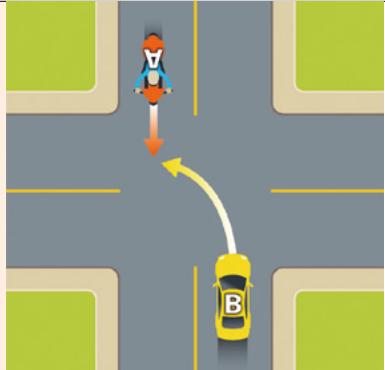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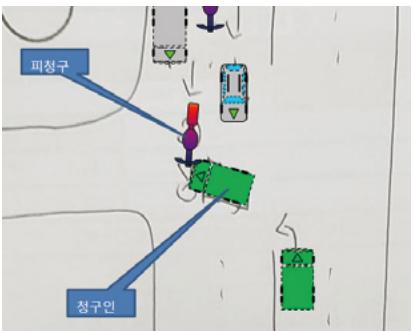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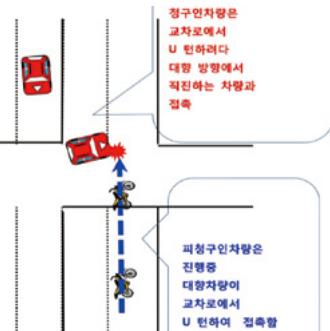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324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739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한 이후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맞은편 도로의 1,2차로 사이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2차로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유턴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1차로와 2차로의 좁은 공간으로 선행차량들을 추월하면서 직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이륜차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좌회전 대 직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없음	사거리	좌회전	직진

325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64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차량들 사이로 좌회전 중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5	<p>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청구차량[이륜차]이 밀리면서 3차량을 재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불가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th><th style="text-align: right;">교통사고 접수번호</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성명</td><td colspan="2"></td><td style="width: 15%; text-align: right;">[선택] 주민등록번호 [선택] 회로번호</td></tr> <tr> <td>주소</td><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선택] 전화번호</td></tr> <tr> <td>운전면허</td><td>증명: 제 1종 보통</td><td>면허:</td><td></td></tr> <tr> <td>사고차량</td><td>차종: 승용차</td><td>번호: [선택]</td><td>소유자: [선택]</td></tr> <tr> <td></td><td>발행일자</td><td colspan="2">2018.05.25 17:00</td></tr> <tr> <td>발행장소</td><td colspan="3"></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급속 <input type="checkbox"/> 과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3">방향전환의무위반</td></tr> <tr> <td>피해내용</td><td colspan="3"> 연령: 사망 0, 부상 3 명 출몰: 2,290,000 원 상당 #1오토바이에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한 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후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출입구를 관통하는 #2차량 앞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1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3차량을 약간 치어온 사고임. </td></tr> <tr> <td>사고개요</td><td colspan="3"></td></tr> </tbody> </table>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성명			[선택] 주민등록번호 [선택] 회로번호	주소	[선택] 전화번호			운전면허	증명: 제 1종 보통	면허: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선택]	소유자: [선택]		발행일자	2018.05.25 17:00		발행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급속 <input type="checkbox"/> 과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방향전환의무위반			피해내용	연령: 사망 0, 부상 3 명 출몰: 2,290,000 원 상당 #1오토바이에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한 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후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출입구를 관통하는 #2차량 앞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1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3차량을 약간 치어온 사고임.			사고개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성명			[선택] 주민등록번호 [선택] 회로번호																																									
주소	[선택] 전화번호																																											
운전면허	증명: 제 1종 보통	면허: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선택]	소유자: [선택]																																									
	발행일자	2018.05.25 17:00																																										
발행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급속 <input type="checkbox"/> 과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방향전환의무위반																																											
피해내용	연령: 사망 0, 부상 3 명 출몰: 2,290,000 원 상당 #1오토바이에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한 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후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출입구를 관통하는 #2차량 앞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1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3차량을 약간 치어온 사고임.																																											
사고개요																																												

-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정체차량들 사이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이 확인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사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교사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이륜차]은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급좌회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인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점, 충격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5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좌회전 이륜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 차량인 피청구차량의 과실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인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5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급좌회전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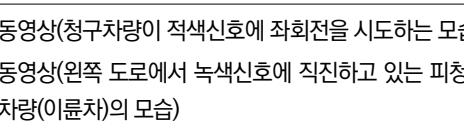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자동차 적색신호 좌회전) (기본과실)				참고기준
				326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31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6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 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이후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 <th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7-1234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30%;">성명</td><td style="width: 40%;"><input type="checkbox"/>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주민등록번호</td><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480-12345-12345</td></tr> <tr> <td>주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본인번호 : 010-1234-5678)</td></tr> <tr> <td>출현면적</td><td>종별 : 제1종 대형 번호 : 20-73-12345</td><td></td></tr> <tr> <td>사고처상</td><td>차종 : 이륜차 번호 : 서울-12345 (소유자 :)</td><td></td></tr> <tr> <td>발생일시</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017.07.17 18:03</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2"></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신호 또는 자시 위반</td></tr> <tr> <td>운행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면적 : 차량 A, 부속 1 종, 출입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td></tr> <tr> <td>사고개요</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본인번호 : 010-1234-5678) 시가지 교差点에서 차량 A가 신호위반으로 차량 B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A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7-12345	성명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480-12345-12345	주소	(본인번호 : 010-1234-5678)		출현면적	종별 : 제1종 대형 번호 : 20-73-12345		사고처상	차종 : 이륜차 번호 : 서울-12345 (소유자 :)		발생일시	2017.07.17 18:03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자시 위반		운행내용	면적 : 차량 A, 부속 1 종, 출입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개요	(본인번호 : 010-1234-5678) 시가지 교差点에서 차량 A가 신호위반으로 차량 B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A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7-12345																																
성명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480-12345-12345																																
주소	(본인번호 : 010-1234-5678)																																	
출현면적	종별 : 제1종 대형 번호 : 20-73-12345																																	
사고처상	차종 : 이륜차 번호 : 서울-12345 (소유자 :)																																	
발생일시	2017.07.17 18:03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자시 위반																																	
운행내용	면적 : 차량 A, 부속 1 종, 출입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 운행 경로 : 차량 A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개요	(본인번호 : 010-1234-5678) 시가지 교差点에서 차량 A가 신호위반으로 차량 B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A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차량 B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 차량(이륜차)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동영상(사고 발생 전 왼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청구 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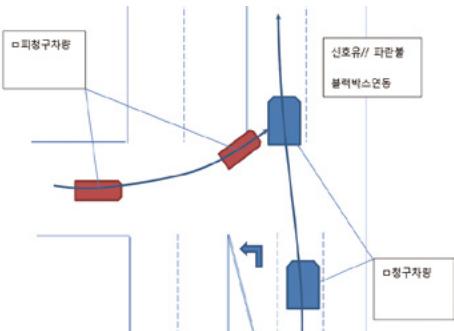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임에도 신호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감행하여 왼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의 대기상태는 본 사고 발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차량은 신호변경이 되자 빠르게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6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이륜차가 서로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녹색신호에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2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이륜차 적색신호 좌회전) (기본과실 준용)					참고기준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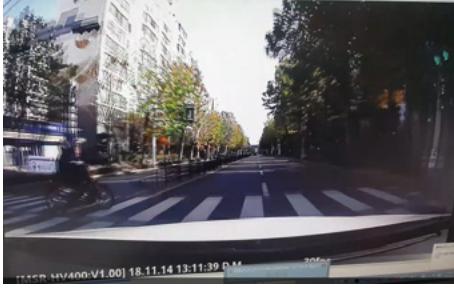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6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7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 없이 좌회전 중 녹색신호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7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한쪽 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신호가 없는 상태이나,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였고,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27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이륜차 적색신호 직진)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329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77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9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p>	<p>사고발생점 사고 1차원적 전행하는 기준(승용차) 사고, 2차원적 충돌하는 기준(승용차) 사고발생점 사고 2차원적이 전행하는 기준(승용차) 반통행상의 선행차량</p>	<p>충돌 기준 서행차 차량</p>

입증 자료

	
<p>• 동영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청구차량의 모습)</p> <p>•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p>	<p>•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신호위반이 기재됨</p> <p>•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p>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면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9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이륜차 적색신호 직진)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32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05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9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소로에서 좌회전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좌회전한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차량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함

결정 이유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신호기가 없는 도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때 좌우 주시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9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29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신호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차량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가)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좌회전 대 직진) (A·B적색)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331 (가)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920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중 왼쪽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1(가)		<p>(가) 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양측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한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왼쪽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모습) 동영상(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임)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왼쪽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충돌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 하였던 점, 동영상에 왼쪽의 횡단보도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1의 (가)는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이지만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한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으며,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한 경우이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도표 331의(가)와 동일하여, 도표 331의 (가)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은 왼쪽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 직진(좌측도로 에서 진입)	← 좌회전(우측도로 에서 진입)	참고기준 332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621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2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B차량이 우측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의 사고에 관한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좌회전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이면도로에서 서행 직진 중 오른쪽 공장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일시정지 않고, 좌회전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오른쪽 도로를 진행하는 모습)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임)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은 서행하여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2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 직진(좌측도로 에서 진입)	← 좌회전(우측도로 에서 진입)	참고기준 332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279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5 : 6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2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B차량이 우측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의 사고에 관한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음)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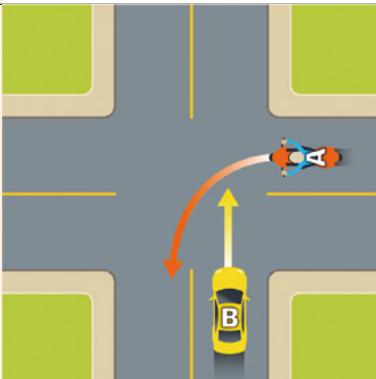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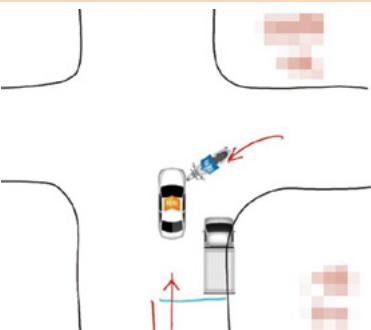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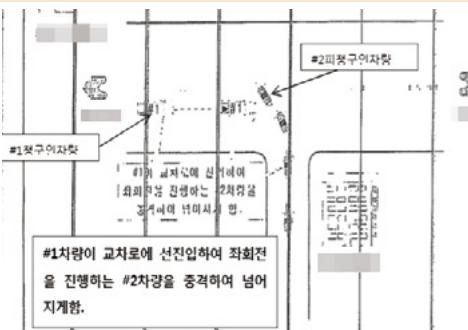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하며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을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직진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2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2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5% ● 피청구차량 3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교차로	좌회전(우측도로 에서 진입)	직진(좌측도로 에서 진입)	참고기준 33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3	 <p>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B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A이륜차가 우측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중앙선이 있는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소로에서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왼쪽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된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3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이륜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한 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고, 청구차량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해차량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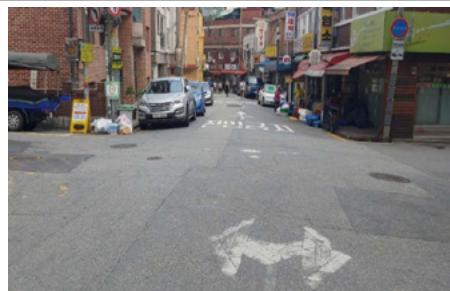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교차로		좌회전(좌측도로 에서 진입)		직진(우측도로 에서 진입)	참고기준
									335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15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5	<p>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고 좌측차량인 경우에는 도표 33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 양측의 기본 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역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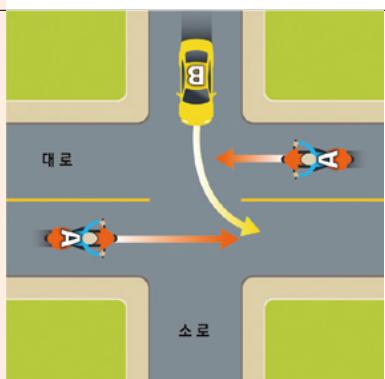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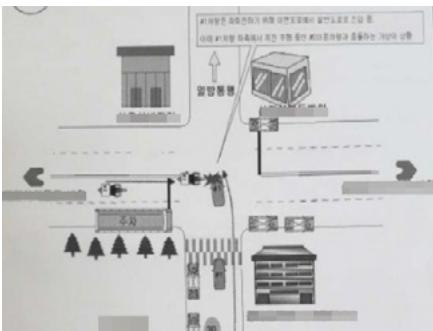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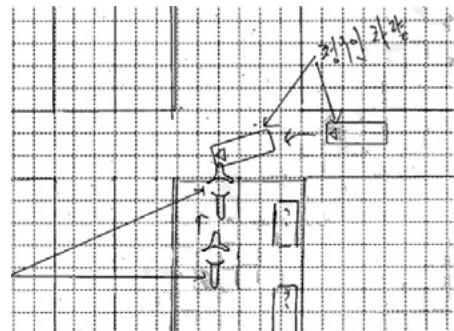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피청구차량이 직진 차량임을 확인할 자료는 없고, 또한 직진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삼거리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5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므로, 도표 33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336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265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서행하며 좌회전 중 왼쪽 대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6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10 : 9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기좌회전,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5%, 피청구차량의 과실 35%가 타당함</p>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th></tr> </thead> <tbody> <tr> <td>설명</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차량화 주민등록번호</td></tr> <tr> <td>속도</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한화번호)</td></tr> <tr> <td>운전면허</td><td>증명 : 제1종 보통</td><td>번호 : (한화번호)</td></tr> <tr> <td>사고차량</td><td>차종 : 승용차</td><td>번호 : (한화번호) (소유자 : ■■■■■)</td></tr> <tr> <td>발생일시</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19.01.31 15:06</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량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안전운전 등 무위반</td></tr> <tr> <td>피해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범죄 : 차량 우 . 부상 ! 영 . 충돌 : ■■■■■</td></tr> <tr> <td colspan="3"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 text-align: center;">#1 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이연도로에서 일련도로로 진입 중, 이때 #1차량 좌측에서 직진 주행중인 #2이륜차량이 피해 #1차량 좌측 및 뒷좌석을 충격한 사고임.</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	설명	■ 차량화 주민등록번호		속도	(한화번호)		운전면허	증명 : 제1종 보통	번호 : (한화번호)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한화번호) (소유자 : ■■■■■)	발생일시	2019.01.31 15:06		발생장소	■■■■■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 등 무위반		피해내용	범죄 : 차량 우 . 부상 ! 영 . 충돌 : ■■■■■		#1 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이연도로에서 일련도로로 진입 중, 이때 #1차량 좌측에서 직진 주행중인 #2이륜차량이 피해 #1차량 좌측 및 뒷좌석을 충격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																																
설명	■ 차량화 주민등록번호																																	
속도	(한화번호)																																	
운전면허	증명 : 제1종 보통	번호 : (한화번호)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한화번호) (소유자 : ■■■■■)																																
발생일시	2019.01.31 15:06																																	
발생장소	■■■■■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 등 무위반																																	
피해내용	범죄 : 차량 우 . 부상 ! 영 . 충돌 : ■■■■■																																	
#1 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이연도로에서 일련도로로 진입 중, 이때 #1차량 좌측에서 직진 주행중인 #2이륜차량이 피해 #1차량 좌측 및 뒷좌석을 충격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목격차량 동영상(사고 후 양 차량이 정차한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과 피청구차량의 과속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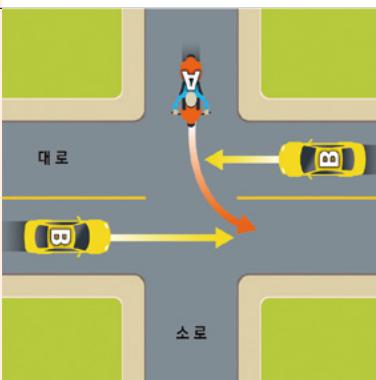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중 왼쪽 대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며, 피청구차량은 빠른 속도로 직진 하였음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상당부분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이나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6은 대소로가 구분되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소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대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직진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교차로	소로 좌회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3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1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7		<p>A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신호에 따라 진행한 청구차량은 무과실이 타당함</p>		 <p>•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편도 2차로의 대로임)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쪽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사고지점과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7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대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직진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교차로	소로 좌회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3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230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7		<p>A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서행으로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소홀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교통사고사실확인원</th> <th style="text-align: right;">보통사고 접수번호 : 제2019_3</th> </tr> </thead> <tbody> <tr> <td>성명</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차량과 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점포번호 : 123-4567)</td> </tr> <tr> <td>운전연혁</td> <td colspan="2">범위 : 제2종 보통 번호 : 264-5678 (소유자 : 1234)</td> </tr> <tr> <td>사고차량</td> <td colspan="2">차종 : 승용차 번호 : 2019-12345678 (소유자 : 1234)</td> </tr> <tr> <td>발생일시</td> <td colspan="2">2019.05.29 14:15</td> </tr> <tr> <td>발생장소</td> <td colspan="2">[Redacted]</td> </tr> <tr> <td>사고유형</td> <td colspan="2"><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r> <td>사고증인</td> <td colspan="2">교차로 충돌방법위반</td> </tr> <tr> <td>피해내용</td> <td colspan="2">인상 : 사상 0, 부상 1 명, 손상 : 등 상당 (1) 오토바이가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좌회전한다.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차량이 충돌하여 부딪친 것이다.</td> </tr> <tr> <td>사고개요</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통사고 접수번호 : 제2019_3	성명	<input type="checkbox"/> 차량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점포번호 : 123-4567)		운전연혁	범위 : 제2종 보통 번호 : 264-5678 (소유자 : 1234)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2019-12345678 (소유자 : 1234)		발생일시	2019.05.29 14:1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교차로 충돌방법위반		피해내용	인상 : 사상 0, 부상 1 명, 손상 : 등 상당 (1) 오토바이가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좌회전한다.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차량이 충돌하여 부딪친 것이다.		사고개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통사고 접수번호 : 제2019_3																																
성명	<input type="checkbox"/> 차량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점포번호 : 123-4567)																																	
운전연혁	범위 : 제2종 보통 번호 : 264-5678 (소유자 : 1234)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2019-12345678 (소유자 : 1234)																																	
발생일시	2019.05.29 14:1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교차로 충돌방법위반																																	
피해내용	인상 : 사상 0, 부상 1 명, 손상 : 등 상당 (1) 오토바이가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좌회전한다. [Redacted]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차량이 충돌하여 부딪친 것이다.																																	
사고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모습이 확인됨)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로 보이고, 피청구차량이 왼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7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 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대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7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대로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준용)	신호등 없음			교차로	↑ 소로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대로좌회전<(오른 쪽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339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73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형 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9		대로 좌회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에 있어 기본과실을 50:50으로 보는 도표 223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형태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소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소좌회전 중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 사실 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교통사고 접수번호 462019-000000000000</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성명</td><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가족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척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td></tr> <tr> <td>주소</td><td colspan="2">(광화문동)</td></tr> <tr> <td>운전면적</td><td colspan="2">승설: 제1종 보통</td></tr> <tr> <td>시기/장소</td><td>작성자: 예우희</td><td>년월: 2019년01월 (수정일):</td></tr> <tr> <td colspan="3">발생일시: 2019.01.14 (월) 18:00</td></tr> <tr> <td colspan="3">발생장소:</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2"></td></tr> <tr> <td>피해내용</td><td>언제 시장 0. 부상 0명</td><td>불과: 0 원 상당</td></tr> <tr> <td colspan="3"> <small>#1 차량(스즈uki 쥬노) 운전자 명이 [redacted]이며 [redacted]로 운전석 좌석에 탑승한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2 차량(현대 캐나디언) 운전자는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차량주인은 충돌직전기 뒤집어진 차량이나 충돌직전에 놓게 된 차량을 피해 회전전차는 본인을 놓아야겠다고 진술합니다.</small> </td></tr> <tr> <td>사고내용</td><td colspan="2"></td></tr> </tbody> </table>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462019-000000000000	성명	<input type="checkbox"/> 가족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척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주소	(광화문동)		운전면적	승설: 제1종 보통		시기/장소	작성자: 예우희	년월: 2019년01월 (수정일):	발생일시: 2019.01.14 (월) 18: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피해내용	언제 시장 0. 부상 0명	불과: 0 원 상당	<small>#1 차량(스즈uki 쥬노) 운전자 명이 [redacted]이며 [redacted]로 운전석 좌석에 탑승한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2 차량(현대 캐나디언) 운전자는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차량주인은 충돌직전기 뒤집어진 차량이나 충돌직전에 놓게 된 차량을 피해 회전전차는 본인을 놓아야겠다고 진술합니다.</small>			사고내용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462019-000000000000																																			
성명	<input type="checkbox"/> 가족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척자녀 <input type="checkbox"/> 조부(부모)																																				
주소	(광화문동)																																				
운전면적	승설: 제1종 보통																																				
시기/장소	작성자: 예우희	년월: 2019년01월 (수정일):																																			
발생일시: 2019.01.14 (월) 18: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피해내용	언제 시장 0. 부상 0명	불과: 0 원 상당																																			
<small>#1 차량(스즈uki 쥬노) 운전자 명이 [redacted]이며 [redacted]로 운전석 좌석에 탑승한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2 차량(현대 캐나디언) 운전자는 차량주인으로, 대각선 우회전 차량이 종종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오르며 부딪쳤습니다. 차량주인은 충돌직전기 뒤집어진 차량이나 충돌직전에 놓게 된 차량을 피해 회전전차는 본인을 놓아야겠다고 진술합니다.</small>																																					
사고내용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후 넘어진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였다고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쪽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소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 형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소좌회전 형태로 진행하였음을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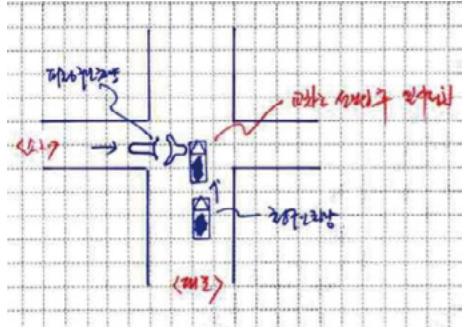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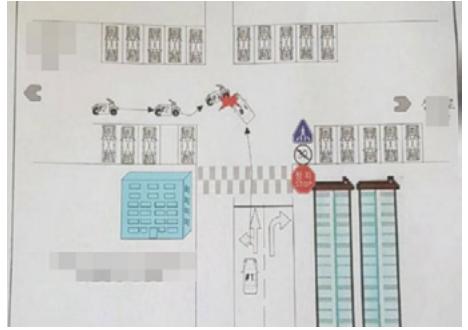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왼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소좌회전한 사실이 본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주행한 차량이므로, 통행우선권이 있었던 점, 피청구차량이 직진형태로 우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9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23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60%, 소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 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였다는 사실이 도표 339와 상이하나, 피청구차량은 직진형태로 우회전을 하였고, 나머지 사설관계가 동일하여 도표 339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자동차)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참고기준 34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81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46	<p>B차량이 좌회전차량으로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표 225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 중 소로에서 후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확인 후 일시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형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소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과실 도표 346의 기본과실 적용함이 타당함(청구차량의 과실 90%)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교통사고사실확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성명</td><td>고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0103-00001</td></tr> <tr> <td>주소</td><td>접수일자 2019.03.24 11:00</td></tr> <tr> <td>운전면허</td><td>발행장소 부산광역시</td></tr> <tr> <td>사고차량</td><td>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증인</td><td>사고증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td></tr> <tr> <td>사고내용</td><td>피해내용 현장 사정 0. 부상 1 명 별도: 0명</td></tr> <tr> <td>사고개요</td><td>※ 1. 충돌 차량은 차량 A입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하면서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성명	고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0103-00001	주소	접수일자 2019.03.24 11:00	운전면허	발행장소 부산광역시	사고차량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사고증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내용	피해내용 현장 사정 0. 부상 1 명 별도: 0명	사고개요	※ 1. 충돌 차량은 차량 A입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하면서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성명	고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0103-00001																	
주소	접수일자 2019.03.24 11:00																	
운전면허	발행장소 부산광역시																	
사고차량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사고증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내용	피해내용 현장 사정 0. 부상 1 명 별도: 0명																	
사고개요	※ 1. 충돌 차량은 차량 A입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하면서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한 후 차량 A의 운전자는 차량 A를 차량 B로 향해 운전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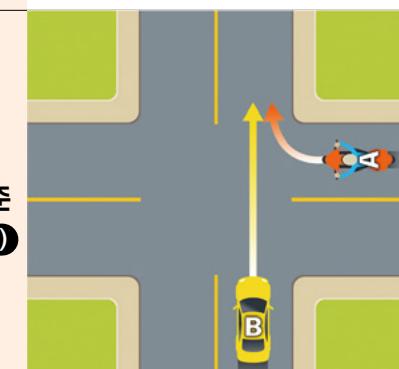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모습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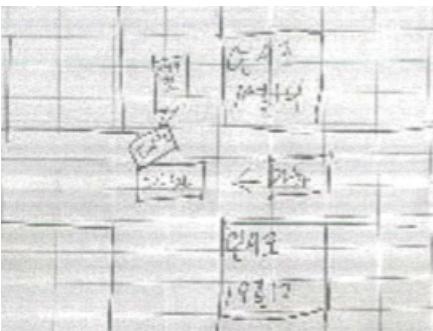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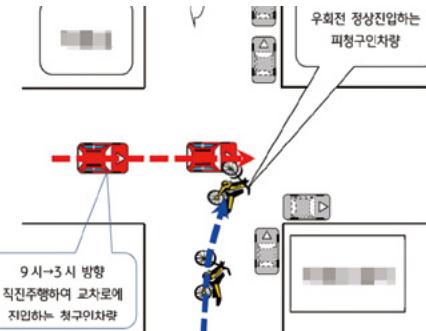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행 방향에 '정지' 표지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직진을 주장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6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좌회전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표 225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46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348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58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48(다)	 <p>(다) 우회전차량인 A이륜차가 후진입한 경우에 도표 229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오른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교차로를 통과한 청구차량의 측면을 피청구차량이 충격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55%, 피청구차량의 과실 45%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생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을 하면서 앞바퀴 부분으로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8의 (다)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29의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선진입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진입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48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직진 대 우회전 사고 (동일 폭 도로) (동시진입) (수정과실)					참고기준 34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93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49(가)	<p>(가) B차량이 우측 우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29를 준용 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를 서행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임)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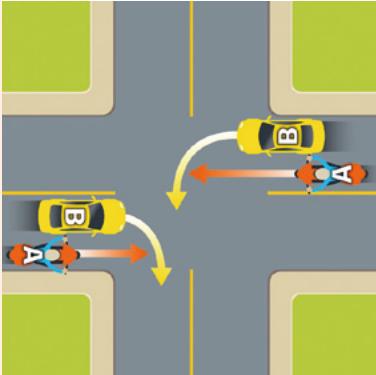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크게 우회전하면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인식가능하여 피양기능성이 있는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9의 (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29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 과실을 10% 낮추어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49의 (가)를 기초로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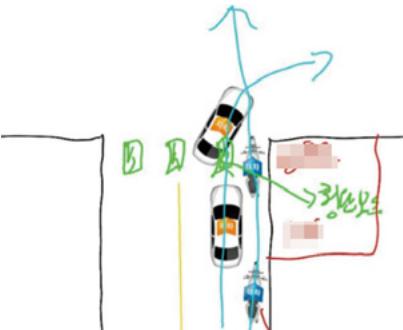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후행 직진	선행 우회전 (좌회전 포함)	참고기준 364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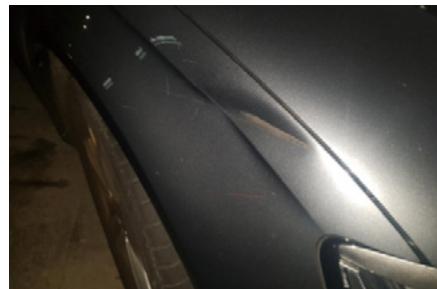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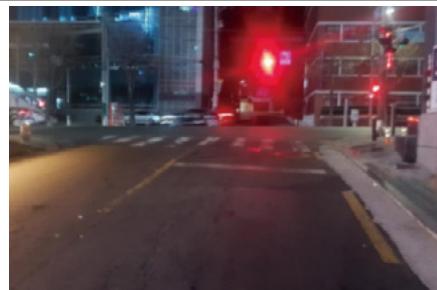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574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4	 <p>기본비율 A : B = 60 : 40</p> <p>A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동일차로의 왼쪽에서 우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쪽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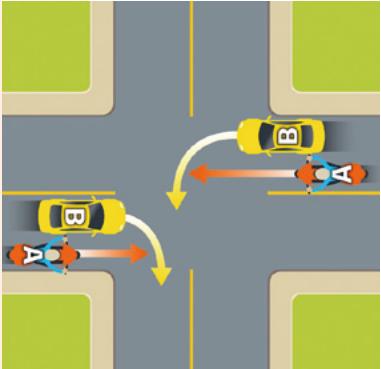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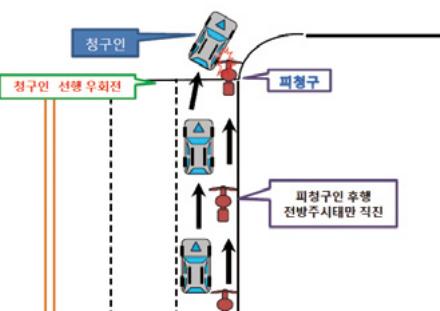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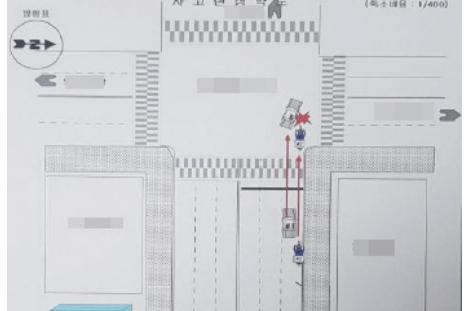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이나 우회전하기 전 전후좌우를 두루 살필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후행 직진	선행 우회전 (좌회전 포함)	참고기준 36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8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B)이 교차로 부근에서 급우회전 중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A)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4	 <p>A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였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를 직진 중 선행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고장</td><td style="width: 50%;">고장신고</td></tr> <tr> <td>주소</td><td>접수번호</td></tr> <tr> <td>운전면적</td><td>경찰서</td></tr> <tr> <td>사고차량</td><td>제2018-0001호</td></tr> <tr> <td>차종: 이륜차</td><td>번호: 서울강</td></tr> <tr> <td>별명</td><td>(소유자:)</td></tr> <tr> <td>발생장소</td><td>고장날짜: 2018-09-25 18:52:00</td></tr> <tr> <td>사고부위</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체 <input type="checkbox"/> 차체부속 <input type="checkbox"/> 사내사행 <input type="checkbox"/> 기관</td></tr> <tr> <td>사고원인</td><td>화재로 충돌방지위반(도로환경)</td></tr> <tr> <td>피해내용</td><td>전체 차체 외부 우상 손상</td></tr> <tr> <td>사고내용</td><td>※ 차량은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장	고장신고	주소	접수번호	운전면적	경찰서	사고차량	제2018-0001호	차종: 이륜차	번호: 서울강	별명	(소유자:)	발생장소	고장날짜: 2018-09-25 18:52:00	사고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체 <input type="checkbox"/> 차체부속 <input type="checkbox"/> 사내사행 <input type="checkbox"/> 기관	사고원인	화재로 충돌방지위반(도로환경)	피해내용	전체 차체 외부 우상 손상	사고내용	※ 차량은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장	고장신고																								
주소	접수번호																								
운전면적	경찰서																								
사고차량	제2018-0001호																								
차종: 이륜차	번호: 서울강																								
별명	(소유자:)																								
발생장소	고장날짜: 2018-09-25 18:52:00																								
사고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체 <input type="checkbox"/> 차체부속 <input type="checkbox"/> 사내사행 <input type="checkbox"/> 기관																								
사고원인	화재로 충돌방지위반(도로환경)																								
피해내용	전체 차체 외부 우상 손상																								
사고내용	※ 차량은 차체 우상에 충돌로 차체 외부에 우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 동영상(청구차량이 급우회전 중 후행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파손 사진(조수석 앞도어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급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의 청구차량이 선행하다가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우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동일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급우회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동일차로의 차량들 우측으로 계속 추월 진행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자로 판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사고 직전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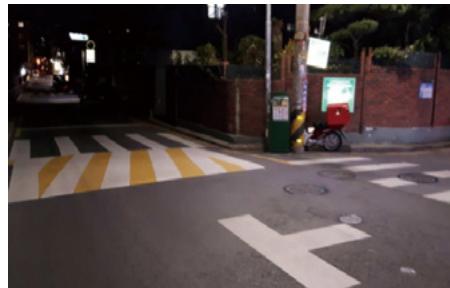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364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37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4	<p>기본비율 A : B = 60 : 40</p>	

A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후행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동일차로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미리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왼쪽에서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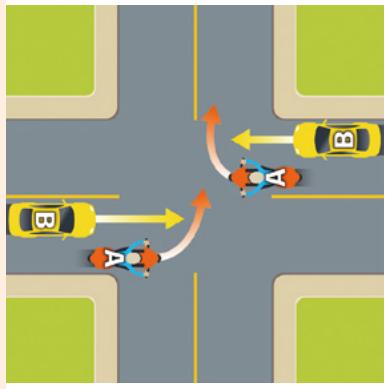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왼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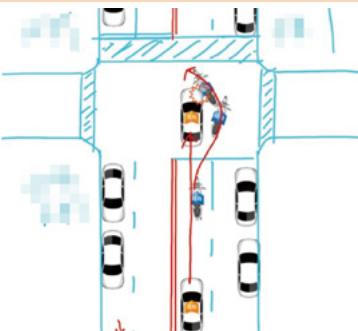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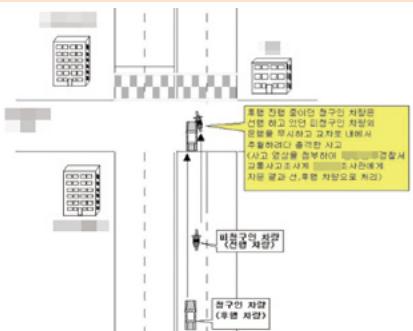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 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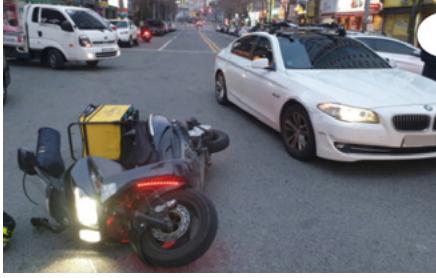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선행 좌(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366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p>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에서 추월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66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동일차로를 진행중인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의무가 있으므로 B차량은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A이륜차와의 안전거리 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에서 차로의 좌 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진행중인 A이륜차의 우측이 나 좌측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중 하다고 할 것이지만, A이륜차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의 경우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진행함으로 써 후행차량의 추월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여 진행하였고, 후행 청구 차량이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직진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사고 후 양 차량의 정차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후행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의 오른쪽을 통해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다소 급하게 좌회전(또는 유턴)을 시작하여 추월 직진하려던 후행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후행 청구차량의 과실이 다소 중한 점,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좌회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6은 동일 차로 내에서 선행 이륜차가 좌(우)회전을 하다가 후행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은 동일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후행차량은 선행 이륜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륜차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이륜차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추월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선행 좌(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도표 36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급좌회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선행 좌회전 대 추월 직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없음	사거리	좌회전	추월 직진 368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07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p>•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68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1차량은 #2차량의 좌회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조수석 앞문부분으로 #2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함. #1차량 앞을 진행하는 #2차량</p> <p>3.7m</p> <p>피청구인</p> <p>#1차량은 #2차량의 좌회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조수석 앞문부분으로 #2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함. #1차량 앞을 진행하는 #2차량</p> <p>3.7m</p>		

-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여 직진 중 갑자기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추월,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추월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교통사고 접수번호</th><th>경찰서 제2018-XXXX호</th></tr> </thead> <tbody> <tr> <td>성명</td><td>■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td><td></td><td></td></tr> <tr> <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 <td>운전면허</td><td colspan="3">종별 : 제1종 보통 번호 : </td></tr> <tr> <td>사고차량</td><td colspan="3">차종 : 승용차 번호 : 645-XXXX (소유자 :)</td></tr> <tr> <td>발생일시</td><td colspan="3">2018.07.31 13:37</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3">[Redacted]</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3"><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상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3">안전운전에무관</td></tr> <tr> <td>피해내용</td><td colspan="3">인피 : 차량 0 . 부상 1 명 雜損 : 0 원상</td></tr> <tr> <td>사고개요</td><td colspan="3">#1차량이 도로의 무전에서 전복하는 #2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하면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2차량을 충격한 것이다.</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제2018-XXXX호	성명	■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주소	(전화번호 :)			운전면허	종별 : 제1종 보통 번호 :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645-XXXX (소유자 :)			발생일시	2018.07.31 13:37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에무관			피해내용	인피 : 차량 0 . 부상 1 명 雜損 : 0 원상			사고개요	#1차량이 도로의 무전에서 전복하는 #2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하면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2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제2018-XXXX호																																											
성명	■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주소	(전화번호 :)																																													
운전면허	종별 : 제1종 보통 번호 :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645-XXXX (소유자 :)																																													
발생일시	2018.07.31 13:37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에무관																																													
피해내용	인피 : 차량 0 . 부상 1 명 雜損 : 0 원상																																													
사고개요	#1차량이 도로의 무전에서 전복하는 #2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하면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2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1)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자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2)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선행 이륜차와 이륜차를 추월하는 후행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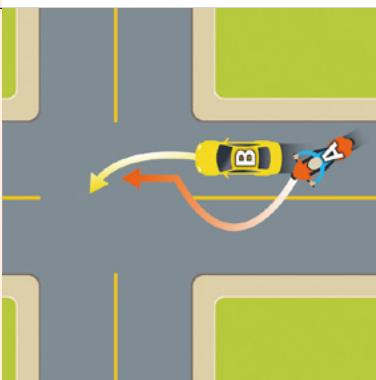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왼쪽으로 추월하여 직진 중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월을 시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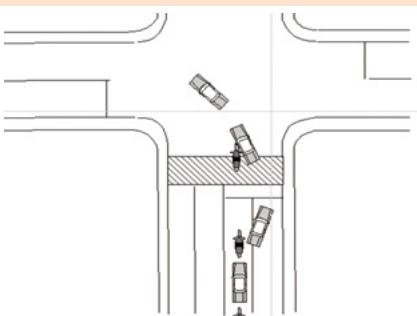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행차량인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추월하는 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점,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사고현장 사진, 청구차량의 충격부위 등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8은 동일차로에 내에서 선행 이륜차가 좌회전 중 후행하던 차량이 이륜차를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월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선행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8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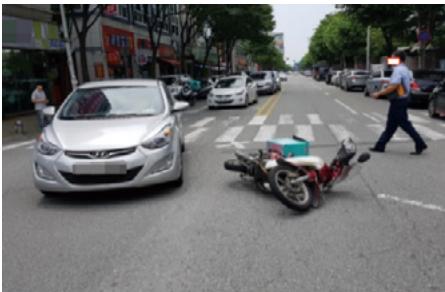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추월 직진 대 선행 좌회전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추월 직진		좌회전	참고기준
369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39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9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1)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도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2)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 부분과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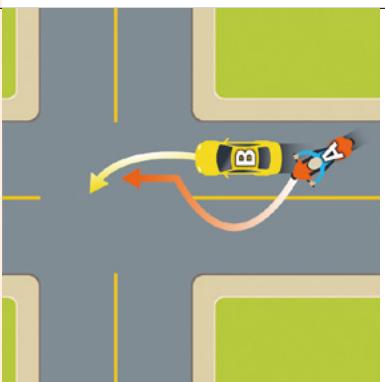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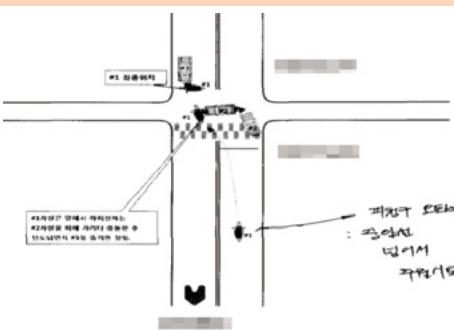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또는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차로 변경이 불명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9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후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 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후행 추월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추월 직진 대 선행 좌회전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추월 직진	좌회전	참고기준 369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337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p>•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여 대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69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 차)이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후행 피청구차량이 왼쪽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후행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시도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이 손상되었고, 피청구차량은 앞부분이 손상되었음)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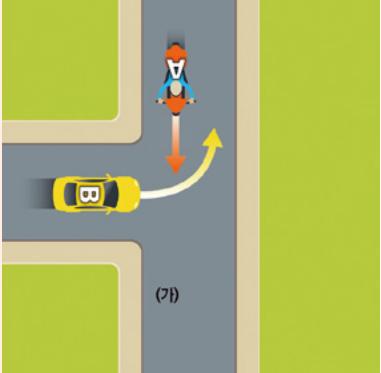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전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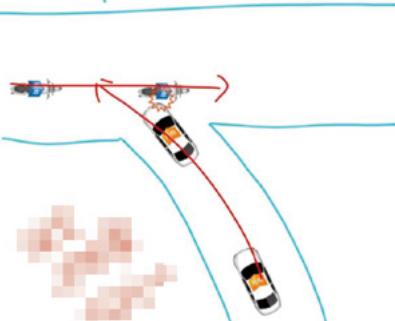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청구차량과 충돌된 사고로, 후행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왼쪽 공간을 넓게 비워둔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9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후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후행 추월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9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직진 대 좌회전사고 (도표 332 준용)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삼거리	직진	좌회전	참고기준 37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9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2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접촉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였던 점,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인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2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직진 대 좌회전사고 (도표 334 준용)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 직진	← 좌회전	참고기준 37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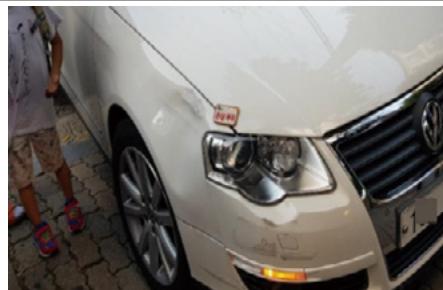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왼쪽 도로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2	<p>기본비율 A : B = 10 : 90</p>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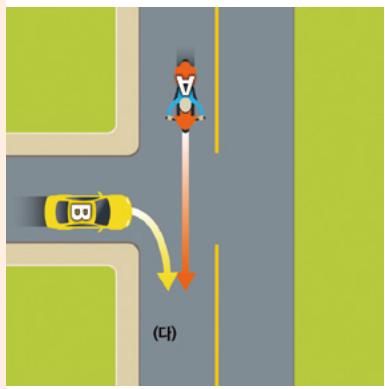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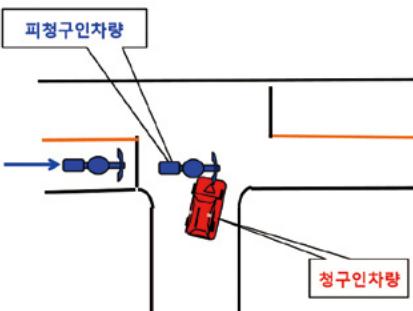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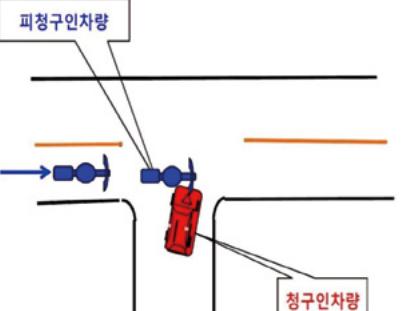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에게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4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직진 대 우회전사고 (도표 351 준용)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대로 직진	참고기준
					372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2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지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소로)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로)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소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51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좌회전 대 직진 사고 (도표 333 준용)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좌회전	직진	참고기준 37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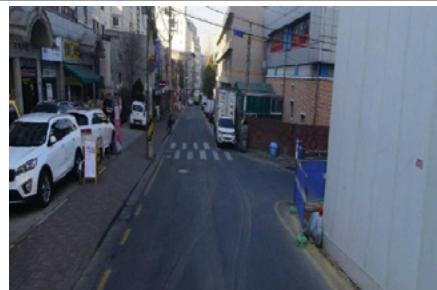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11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p>•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73	<p>기본비율 A : B = 60 : 40</p>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서행불이행하며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사고이며,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앞으로 좌회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3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좌회전 대 직진 사고 (도표 335 준용) (기본과실)					참고기준 37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76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3	<p>기본비율 A : B = 70 : 30</p>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후진입 후 운전부주의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부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 상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로 확인되는 점, 양 차량의 선진입 및 일시정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는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 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5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좌회전 대 직진 사고 (도표 337 준용)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좌회전	직진	참고기준 37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p>•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73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소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한 점, 사고 장소는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들이 있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청구차량이 우측 일방통행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차량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 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과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7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도표 350 준용)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참고기준 37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546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까지 대우 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73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소로에서 우회전 후 1차로까지 급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불가능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직진,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고통사고 검수번호</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종속경찰서</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d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d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d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주소</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로선번호</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처량</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발생일시</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발생장소</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유형</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좌우사摔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별도</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피해내용</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개요</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내용</td><td colspan="3"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검수번호	종속경찰서	[인증번호]	[인증번호]	[인증번호]	[인증번호]	주소	[인증번호]			로선번호	[인증번호]			사고처량	[인증번호]			발생일시	[인증번호]			발생장소	[인증번호]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좌우사摔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별도	[인증번호]			피해내용	[인증번호]			사고개요	[인증번호]			사고내용	[인증번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검수번호	종속경찰서																																														
[인증번호]	[인증번호]	[인증번호]	[인증번호]																																														
주소	[인증번호]																																																
로선번호	[인증번호]																																																
사고처량	[인증번호]																																																
발생일시	[인증번호]																																																
발생장소	[인증번호]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좌우사摔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별도	[인증번호]																																																
피해내용	[인증번호]																																																
사고개요	[인증번호]																																																
사고내용	[인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1차로까지 대우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 소로에서 1차로까지 횡단 형태로 대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매우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도로 폭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불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과 이륜차가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350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대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1차로까지 대우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도표 358 준용)(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삼거리	좌회전	좌회전	참고기준 374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615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5 : 5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4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직진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도 좌측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삼거리 교차로 형태로 발생하는 주의 의무의 정도는 동일하다.</p> <p>따라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를 그대로 적용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을 완료 한 시점에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의 후방에서 추월하듯 좌회전 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좌회전 중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서행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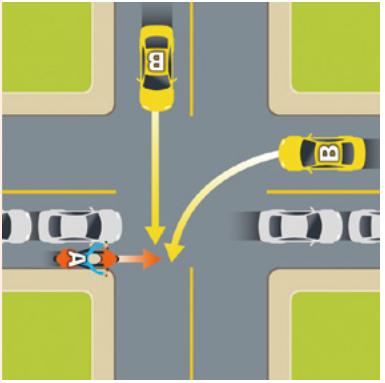
- 동영상상에 의하면,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교차로에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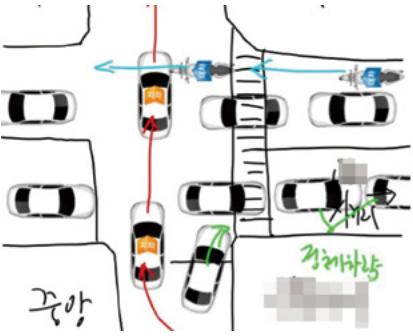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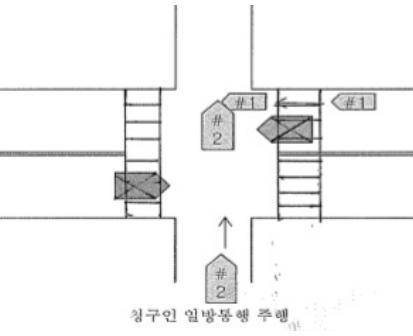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동영상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4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고,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좌측도로에 있는 차량이 좌(우)회전 할 것을 예측 가능하므로, 좌회전 차량 간의 주의의무 정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고, 도표 358을 준용하여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5% ● 피청구차량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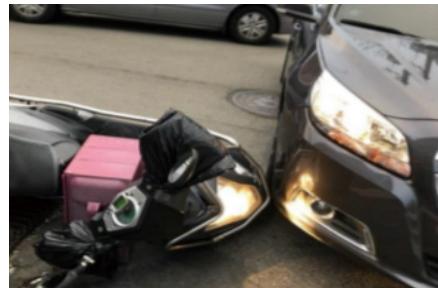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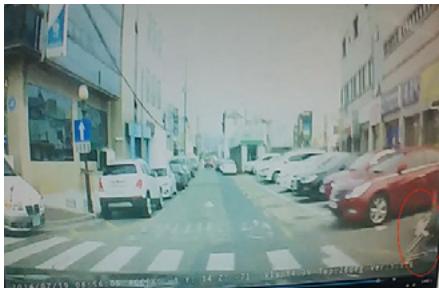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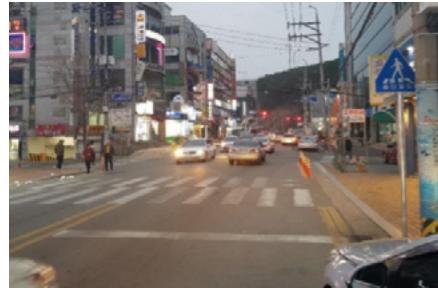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이륜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정체도로 사이)	직진(또는 좌회전)	참고기준 37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24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정체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6	 <p>A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차량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B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직진 중 정체도로의 오른쪽 갓길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로 주행할 것을 청구 차량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 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과 오른쪽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중인 차량과 정체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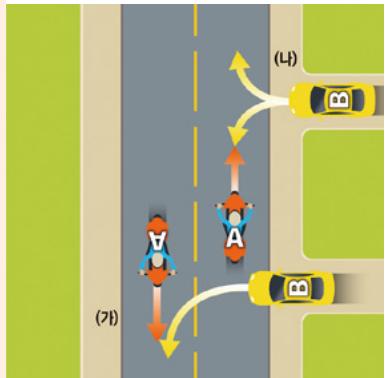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정체도로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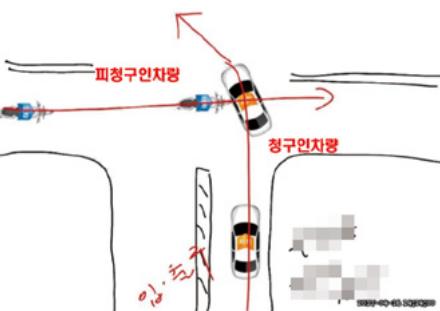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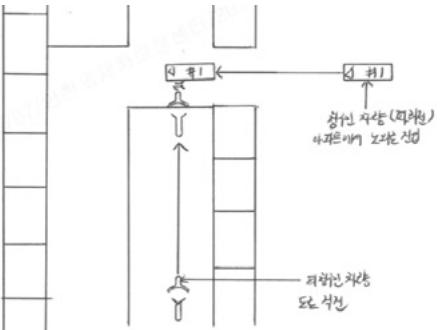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정체된 교차로 사이를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차량들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던 상황과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6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정체도로에서 진행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차량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직진(또는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 정체도로를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정체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므로, 도표 37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자동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직진	차도로 진입	참고기준 37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2515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7		<p>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는 도로 진입 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 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왼쪽 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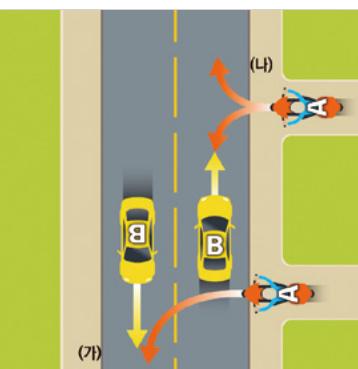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청구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충돌사고로,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은 진입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아파트에서 곧바로 좌회전 진입하였던 점, 이륜차의 속도위반은 입증되지 않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7은 차도가 아닌 곳에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차도를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는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이륜차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37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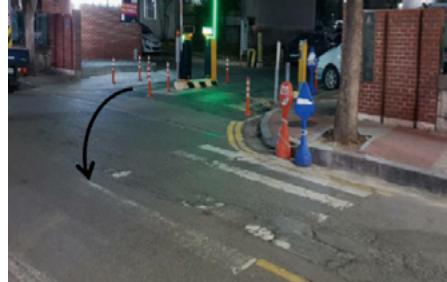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이륜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차도로 진입	직진	참고기준 378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527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8		<p>A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은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이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아파트 입구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임)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충돌한 지점)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차도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편도 1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을 하면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청구차량도 서행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출입구이므로,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8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이륜차가 차도로 진입하던 중 차도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도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교차로 추월 사고(이륜차) (기본과실)				참고기준 384-1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549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84-1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선행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후행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측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를 따라 주행 중 청구차량의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모습) 동영상(후행 피청구차량의 추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차량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거나 피양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차량이 신호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4-1은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점, 후행 이륜차가 선행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선행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선행차량은 후행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행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8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 변경	참고기준
									388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51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88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자동차와 진로변경 자동차의 기본과실은 30:70이지만(도표 252),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 서행불이행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교통사고 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교통사고 검수번호 제2019-호</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등 번호: [Redacted]</td><td style="padding: 5px;"><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인증 확인번호</td><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경찰서</td></tr> <tr> <td style="padding: 5px;">주 소: [Redacte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명로 100 (대명동) [Redacted]</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Redacted]</td></tr> <tr> <td style="padding: 5px;">发生연월: [Redacted]</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Redacted]</td></tr> <tr> <td style="padding: 5px;">차종: 승용차</td><td style="padding: 5px;">번호: [Redacted]</td><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Redacted]</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발행일시: 2019.01.14 17:00</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발행장소: [Redacted]</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피해내용: 인화: 차량 0, 부상 2 명, 물류: 2,965,000 원 상당 ※ 1차량이 진로변경 중 2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사고개요: [Redacted]</td></tr> </tbody> </table>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검수번호 제2019-호	등 번호: [Redact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인증 확인번호	경찰서	주 소: [Redacte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명로 100 (대명동) [Redacted]	[Redacted]		发生연월: [Redacted]	[Redacted]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Redacted]	발행일시: 2019.01.14 17:00			발행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인화: 차량 0, 부상 2 명, 물류: 2,965,000 원 상당 ※ 1차량이 진로변경 중 2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Redacted]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검수번호 제2019-호																																
등 번호: [Redact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인증 확인번호	경찰서																																
주 소: [Redacte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명로 100 (대명동) [Redacted]	[Redacted]																																	
发生연월: [Redacted]	[Redacted]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Redacted]																																
발행일시: 2019.01.14 17:00																																		
발행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인화: 차량 0, 부상 2 명, 물류: 2,965,000 원 상당 ※ 1차량이 진로변경 중 2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Reda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편도 2차로의 도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진로변경하는 선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8은 직진하는 이륜차와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 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은 30% : 70%인 점(도표 252),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행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후행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8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 (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있음		사거리		이륜차 후행 직진		선행 진로 변경	참고기준 388-2 (가)
--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40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유턴신호에 유턴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88-2(가)	<p>(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은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이륜차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이륜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인 차량 • 과속전 측정</p> <p>• 청구인 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정상 유턴 중 안전지대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오른쪽 청구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여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제2019-██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이름					
주소	(관찰번호 : 010)					
운전면적	승급: 제1종 보유면적: 1년주: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					
发生일자 2019.06.03 18:4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마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방법 엄연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단계: 사망 0, 부상 1 명 [redacted] 경상상 #2차량이 [redacted]를 빠져서 [redacted] 속도로 진행하다 위험 구역에서 위험한는데 위험의식 + 2차량이 충돌분리 폭으로 진행하여 한편부로 위험한데 위험의식 + 2차량이 충돌 분리 일부분을 충격한 것임						
사고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악도에 의하면, 피청구 차량이 안전지대 통과 중 청구차량과 충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유턴 중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충돌하는 모습)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유턴을 위해 진로변경 중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는 후행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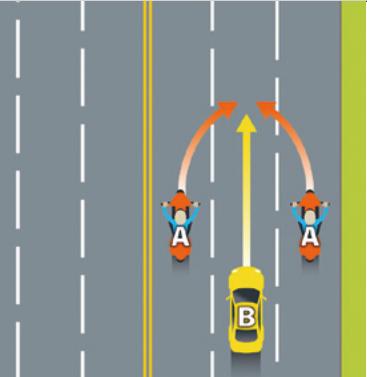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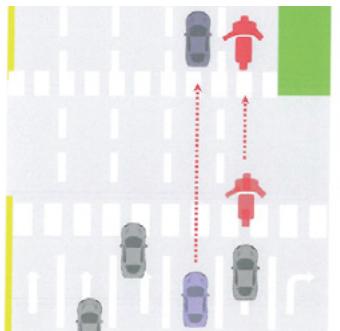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안전지대 통과 중 선행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정상유턴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며 청구차량을 추월하려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주의의무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8-2의 (가)는 선행 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행 이륜차가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이륜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이륜차가 통과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후행 이륜차가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할 것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표 388-2의 (가)와 비교하여 선행 청구차량의 유턴상황만 다르므로, 도표 388-2의 (가)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선행 진로 변경	후행 직진	참고기준 38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4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89	 <p>A이륜차가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도표 25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정상 직진 중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5차로에서 직진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선행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동영상(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진로변경하는 선행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선행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행 차량으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9는 선행 이륜차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한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30% : 70%(도표 252)인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선행 진로변경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8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